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10
----------	-----

2024. 10. 14.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9. 30. 강남구청장(재산세과)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2024년 5월 17일 시행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내 감면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3년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일관되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어 조례 내 문화재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2조)
- 나. 구세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4. 8. 23.~2024. 9.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이 안건은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세 감면 조항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어서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임.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국가유산기본법」¹⁾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제정되고, 한 해 뒤인 2024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 위 법에 따르면 기존의 ‘문화재’란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으며, 국가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됨.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감면 적용 규정의 일몰 기한 도래

- 세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조문별 유효기간 규정방식으로 되어 있고, 각 규정에 명시된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여져 있어서, 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하여야 함.

나. 검토 내용

○ 안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안 제2조에 서술된 ‘문화재’ 라는 용어가 ‘국가유산’ 으로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함.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그러므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 재산세는 구세에 속하므로, 비록 ‘시지정유산’ 과 ‘시지정 국가유산 보호구역’ 에 대한 지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여건에 따라 제55조 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추가 감경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다만, 강남구의 경우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서울 안창호 묘소 소재지 부동산 소유자 및 관리자가 강남구청으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앞으로도 있다고 보이므로, 면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안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

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는 것임.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위 내용과 동일하게 감면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임.

○ 안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 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임.
-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범위에서 면제하고 있으므로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보임.

○ 안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는 것임.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위 내용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 적용 기한의 연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안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였음. 이 조항이 지방세 감면 적용의 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규정이며, 이에 따르면 입법 취지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며,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축물을 시설현대화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있음. 이에 따라 안 제7조의 조 제목도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제7조(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개정안과 같음)

○ 안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는 것이며, 문제가 없다고 보임.

○ 안 제9조(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감경한다는 것임.

-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안 제9조제2항의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시점에 사망하지 않고 아직 세상에 남은 사람’이란 뜻으로 차별적 의미가 담겼다고 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순화 대상 용어로 지정하고 법률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음. 정부는 1981년 대통령경호법을 개정하면서 ‘배우자’라는 단어로 순화하였음.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에서 순화 대상 용어를 바로 잡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9조(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그 배우자가 ----- ----- ----- ----- ----- ----- ----- ----- ----- -----.

- 안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

서, 정부는 감염병 진료를 위한 가용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감염병 진료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음.

- 2024년 9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등은 대부분 해제된 상태이지만, 연초에는 감염병의 일종인 엠폭스(MPOX)가 확산되는 등 종류가 다른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논의가 있음.
- 다른 자치구들도 이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감면하도록 기한을 연장하였으므로,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 종합 의견

○ 구세 감면 유효기한 연장의 타당성

- 일몰제가 각 조문별로 감면 유효기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감면 적용을 계속하려면 각 유효기한을 연장하여야 함. 제도상 본질은 변경되지 않았고, 기존의 구세감면 적용 대상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적용 대상에 대한 감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다고 보임.

○ 구세 감면 규모

- 구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적용하므로, 지난 개정에 따른 유효기한 연장으로 감면된 구세 규모는 다음과 같음.

[붙임 1] 최근 3년간 유효기한 연장으로 감면된 구세 규모

- 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이 조례안의 감면 적용 유효기한도 항목별 각 3년 연장에 해당하므로, 감면될 구세 규모가 이와 비슷하다고 추론해볼 수 있음.
- 올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추계 기준 약 2억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되고, 개정 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의 금액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임.
- 다만, 일부 조문의 용어는 순화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함.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참고 자료

[붙임 1] 최근 3년간 유효기한 연장으로 감면된 구세 규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산세과, 2024. 9. 기준)

(단위 : 건, 천원)

연번	감면조항	감면세목	2022년도 감면		2023년도 감면		2024년도 감면(추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4	1,239	4	1,165	4	1,629
2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과표6천만원 초과분3년간 1.5/1,000)	-	-	-	-	-	-
3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	-	-	-	-	-
4	제6조(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재산세(50)	1,312	262,564	1,371	257,850	1,452	271,652
5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2	439	2	402	2	378
6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등록면허세(11만2천5백원인 경우 4만2백원)	2	289	1	217	-	-
7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그외 6천만원 초과 1.5/1,000)	-	-	-	-	-	-
8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	-	-	-	-	-
총 합 계			1,320	264,531	1,378	259,634	1,458	273,659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 질 의 : 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시행규칙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있는데,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조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 답 변 : 조의 제목 변경에 동의함

7. 토론 요지

- 상위 법령의 용어에 맞추고 순화 대상 용어를 정비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10호

발의일자 : 2024. 10. 14.

제 안 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 법령의 용어로 조 제목을 수정함
- 순화 대상 용어를 수정함

2. 수정내용

- 조 제목을 상위 법령의 용어에 통일하여 수정함(안 제7조 제목)
-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순화 대상 용어를 바로잡음(안 제9조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의 제목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망인이”를 “사별한 배우자가”로 한다.

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027년 12월 31일 -----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 . --- , -----

(개정안과 같음)

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

----- 2027년 12월 31일-----.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② -----

(개정안과 같음)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그 사별한 배우자가 --

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 2027년 12월 31일 -----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 2027년 12월 31일 -----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문화재에 대한 감면)”을“(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망인이”를 “사별한 배우자가”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다.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

--.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 --, -----

-----.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7조(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

----- 2027년 12월 31일-----.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② ----- 사별한 배우자가

----- 2027년 12월 31일-----
--.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

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축물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0
----------	-----

제출연월일: 2024. 9. 30.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재산세과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법 제·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 정비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 내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이 '24.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어 조례 내 문화재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2조)
- 나. 구세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4. 8. 23.~2024. 9.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문화재에 대한 감면)”을“(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다.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

--.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 -----
-----.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

----- 2027년 1
2월 31일-----.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
1일-----.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

② -----

----- 202
7년 12월 31일-----
-----.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

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축물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법 제78조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관련 법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전면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재산세과 세무7급 박효정(02-3423-5642)

[별첨 :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정) 2024.05.20 조례 제92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부칙 <제9268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는 이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